

대전지방법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25비합5001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신청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전세영
사건본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정한진, 정민재

주 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고 2025. 9. 26.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제2-1호, 제2-2호)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9,415,558주 중 13,129,26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44.63%)를 보유함으로써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 ② 신청인이 2025. 4. 25.경 사건본인 이사회에 공문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제2-1호, 제2-2호)과 동일한 내용(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소집청구서(소갑 제4호증)를 발송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 대표이사가 그 무렵 위 소집청구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후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제2-1호, 제2-2호)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주장의 요지

1) 지주회사인 신청인이 계열회사인 사건본인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거쳤어야 하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별지 2 기재 합의를 위반한 경영권 탈취 행위로서 주주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건본인은 이미 2025. 3. 25.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신청인의 의사는 이미 위 정기주주총회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사건본인의 경영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오히려 방해가 되며, 사건본인은 현재 대표이사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급하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신청인이 이사회결의 없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이 부적법한지 여부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명시하였으나, ‘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명시하지 않았고, ‘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위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도 ‘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자회사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그 자체만으로 신청인의 재산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로 사건본인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1 목록 기재 제2호 의안이 반드시 가결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으로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기회가 남아 있고, 실제로 신청인은 2025. 6.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결의한 점(소갑 제14호증 5면 ‘2-2호 의안’), ⑤ 사건본인도 기존에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청인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자회사인 사건본인의 사내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2025. 6.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추진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추진 결의는 신청인의 재적 이사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권한 C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8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사실(소갑 제14호증 3~4면 ‘제2-1호 의안’), 사건본인의 대표 이사는 2025. 7. 1.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5카합50204 가처분 신청사

건에서 별지 1 목록 제2호 의안의 내용 및 이 사건 추인 결의 내용이 담긴 신청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서증으로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건본인의 대표이사가 늦어도 2025. 7. 1.경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제542조의6 제1항에서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추인 결의에 소급효가 없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사건본인은 이 사건 추인 결의에 앞서 신청인의 대표이사 C이 2018. 9. 1.경 D그룹 회장인 E,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F과 체결한 합의의 체결 사실 및 그 체결 경위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개시하지 않아 위 결의가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소집허가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소수주주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주주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의도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결의의 가능성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 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로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D그룹 회장인 E, 신청인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C 및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F은

2018. 9. 1. 당시 E이 보유하던 사건본인 발행 보통주식 1,289,064주의 처분과 사건본인의 향후 운영 등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합의(소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은 소명된다.

이 사건 합의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C은 신청인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F이 E으로부터 부여받은 사건본인의 사업경영권(사건본인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은 C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F의 사건본인에 대한 경영권을 침탈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일단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신청인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C의 신청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F의 사내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사내이사로 C, G를 선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지원·협조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병 제33, 72호증 등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서 밝힌 소집의 이유(사건본인이 2025. 3. 28.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수익성 개선 및 자본효율성 회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와 무관하게 오로지 F의 경영권을 탈취할 의도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주주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다는 사건본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사건본인은 신청인 대표이사가 D그룹 회장인 E의 사전 서면 결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병 제36호증 등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대표이사의 자회사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미등기 임원인 E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사건본인은 이미 2025. 3. 25.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청구 전에 이사 선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그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소집의 필요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그밖에 사건본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사건본인의 경영 정상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사건본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점,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유일한 연결자회사로서 사건본인의 경영실적은 신청인의 경영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2025. 3. 28.경 공시하여 진행 중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이 곧바로 중단되거나 변경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제1호 의안으로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25.

판사 김순한(재판장) 정희진 임동환

별 지

별지 1

목 록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C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G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임기·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C	H	사내이사	2028년 개최 예정인	특수관계인
G	I	사내이사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C	2020~현재	A(주) 부회장	특수관계인
	2016~2020	J(주) 대표이사	
	2011~2016	A(주) 기획관리부문 부사장	

G	2023~2024	K(주) 부사장	-
	2018~2023	L(주) 부사장	
	2014~2018	M(주) 상무	
	2007~2014	N 이사	

끝.

별지 2

합 의 서

[] , [] , [] (이하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작성일 현재 []이 소유한 []
 []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289,064] 주 (이하 "대상주식")의 처분과 그 이후 []
 주식회사 (이하 "[]")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1조 ([]주식의 처분 및 증여)

(1) []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의 자금 소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정하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대상주식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한다.

① (처분대상주식) []은 자금 소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주식 중 일부를 정하여, 제3자 매각 등 여타의 방법으로 대상주식 중 일부를 처분, 담보제공 혹은 유동화할 수 있다. 처분대상주식의 결정 및 그 처분은 전적으로 []의 결정에 따른다.

② (증여대상주식) 대상주식 중 처분대상주식을 제외한 전부는 궁극적으로 모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방법으로 []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단, []이 증여대상주식을 이전 받은 이후, 해당 주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증여 대상주식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주주간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사업의 경영)

(1) []은 상기 제1조에서 따라 증여대상주식의 []에게로의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이 []에 행사하던, []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사업경영권")를 []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2) 상기에서 []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사업경영권")라 함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 주주로서 혹은 []의 최대주주인 [] 주식회사 (이하 "[]")를 통하여 [] 사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전략의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은 []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 []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은 []의 사업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는 물론 나머지 당사자들과 [] 및 그 계열회사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 []

의 사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나머지 당사자들과 [] 및 그 계열회사들의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5) 다만, 본 합의를 통하여 []에게 부여될 []의 사업경영권은 []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 []의 주주로서 가지는 신주인수권, 배당수령의 권리, 주식의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기타)

(1) (비밀유지) 각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의 내용 및 체결사실을 포함하여 본 합의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당사자들간의 비밀로써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2)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각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를 3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1 일

(이하 '당사자'란 및 '입회인'란 기재 생략)